

자료 열람·복사 신청서

사건번호 : 2025제카1294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안두영

제목 :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데이터 원본 및 신뢰성 확인자료 열람·복사 신청

1. 신청 취지

- 공정거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정위가 본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삼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의 산지가격 조사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합니다.

2. 신청 범위

㉠ 축평원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계란가격조사 관련자료 일체

1) 축평원이 계란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근거 법령

2) 축평원 통계자료의 국가데이터처 승인 여부

- 내부 참고자료가 아닌 대외 발표 통계를 작성·공표시에는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필요

3) 축평원의 조사방식과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

- 공정위가 축평원 자료 등을 근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식과 자료의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자료 범위 : 자료는 공정위가 담합 혐의를 제기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 자료에 표시할 사항 : 제공자, 제공받은 날짜, 제공받은 방법(공문, 메일, 기타)

- 자료의 종류

가. 축평원시스템에 계란가격을 입력하기 위해 가입한 회원수(생산자, 유통인)

나. 일자별로 회원이 계란가격을 입력한 인원(생산자, 유통인)

다. 지역별 회원가입 수 및 일자별 인원(생산자, 유통인)

라. 회원 가입자의 특성(조사자료의 대표성과 객관성 확인을 위해 필요)

라-1. 인증별 회원 및 응답률 : 유기인증,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유정란

라-2. 등급별 회원 및 응답률 : 무등급란, 1+, 1, 2등급

라-3. 사육방식별 회원 및 응답률 : 방사, 평사, 0.075케이지, 0.05케이지

라-4. 겸업여부별 회원 및 응답률 : 생산과 유통 겸업, 생산과 가공겸업, 생산과 유통, 가공 겸업

라-5. 사육규모별 회원 및 응답률 : 2만수 미만, 2~4만수, 4~9만수, 9만수 이상

라-6. 판매가격 수취기간별 회원 및 응답률 : 매일, 1주일후, 2주일후, 1개월후

마. 계란가격 조사결과의 신뢰도 및 오차

바. 계란가격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인원이 없는 권역의 가격 결정방법

사. 응답이 없는 권역이 있는 경우 전국가격 결정방법

- 아. 회원 및 응답자중 계란을 원란(선별포장하지 않은 계란)으로 판매하는 비율
- 자. 공표하는 계란가격 산출시 지역별, 규모별 가중치
- 차. 심사관이 축평원 데이터의 국가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검증한 내부 검토 자료 일체

4) 귀 위원회가 축평원의 발표 자료를 이용토록 심판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근거와 사유

㉔ 2009년과 2019년 공정위가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에 대하여 판결한 판결문 일체

3. 신청 이유

○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

- 공정위는 협회의 고시가격이 축평원 가격과 유사하다는 점을 담합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축평원의 조사는 국가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련법령도 미비된 상황이 포착되었는바, 해당 데이터의 생성 과정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증거의 신뢰성 검증

- 피심인인은 축평원의 산출 방식이 실제 시장 가격과는 괴리되고 있거나,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바 가격의 정확성은 농가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축평원의 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비공개로 둔 채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절차적 위법 행위입니다.

4. 요구사항

- 본 신청은 피심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며, 만약 결정 전까지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중대한 ‘방어권 침해’로서 향후 행정소송에서 강력한 취소 사유로 다뤄질 것임을 고지합니다. 즉시 열람·복사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위 피심인: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안두영

